

합천군의회 규칙 제37호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9월 15일

합 천 군 의 회



합천군의회 규칙 제37호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선거구”를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결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본회의 개의 10일”을 “회기시작 7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를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4조제1항 중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를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생략할 수도 있다”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85조제1항 중 “승낙”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주기가”를 “술기운이”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석배정) ① (생략)</p> <p>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u>지역선거구</u>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 ⑥ (생략)</p> <p>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p>	<p>제3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u>----- ----- .</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 ----- ----- ----- . <u>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u></p> <p>③ (현행 ②항과 같음)</p> <p><삭제></p>

<신 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생략)

<신 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생략)

② 의원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 설>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생략)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

----- 제4항 -----
-----.

⑥ (현행 ⑤항과 같음)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신 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생략)

<신 설>

②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6조의3(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안은 전자문서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
----- 회기시작 7일

④ (현행 ③항과 같음)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

② ~ ③ (생략)

제46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신 설>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5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85조(방청의 제한) ① -----

-- 허가-----.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기가 있는 사람
3. <삭제 2012.10.11>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 ③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술기운이 -----
3. <삭제 2012.10.11>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 ③ (생략)

제88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